

No. 28

행정 명령

광범위한 손상을 입은 연방지원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CATTARAUGUS, CAYUGA, CHAUTAUQUA, CORTLAND, ERIE, LIVINGSTON, MONROE, ORLEANS, OSWEGO, OTSEGO, SARATOGA, SCHUYLER, ST. LAWRENCE, SULLIVAN, TOMPKINS, WASHINGTON, WAYNE, 및 WYOMING 카운티 및 인접 지역 재해지역 선포

2011년 4월 26일부터 시작하여 계속된 심한 폭풍이 Cattaraugus, Cayuga, Chautauqua, Cortland, Erie, Livingston, Monroe, Orleans, Oswego, Otsego, Saratoga, Schuyler, St. Lawrence, Sullivan, Tompkins, Washington, Wayne 및 Wyoming 카운티에 발생했으므로; 또한

이 폭풍의 결과로, 뉴욕주의 도로망과 다리, 노반과 관련 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므로;

해당 관할권에 있는 손상된 도로망과 연방지원 고속도로의 즉각적인 복구과 재건은 뉴욕 주민의 보안, 웰빙과 건강에 매우 중요하므로;

만약 재해가 심각하고 큰 규모여서 효과적인 대응이 주 또는 영향 받은 관할권의 능력 밖인 경우, 행정법 2-B조 섹션 28(4)은 주지사에게 연방법률에 의거한 연방지원에 대한 적절한 요청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므로;

미국법 타이틀 23 섹션 120(e)와 125, 그리고 연방 규정법 타이틀 23 섹션 668.101은 긴급 구제 (Emergency Relief) 기금을 승인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자연 재해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은 연방지원 고속도로의 수리 또는 재건을 위한 긴급 구조 프로그램 (Emergency Relief Program)을 설립함으로;

이제, 그러므로, 나,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헌법 및 뉴욕주 법에 따라 내게 확립된 권한에 의해 재해로 인해 주 와 피해지역의 지방정부가 광범위한 손상을 입은 연방지원 고속도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법 2-B조 섹션 28(4)에 따라 나는 이로써 2011년 4월 26일을 기하여 Cattaraugus, Cayuga, Chautaugua, Cortland, Erie, Livingston, Monroe, Orleans, Oswego, Otsego, Saratoga, Schuyler, St. Lawrence, Sullivan, Tompkins, Washington, Wayne 과 Wyoming 카운티 및 인접지역에 주 재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또한, 이 선포는 미국법 타이틀 23 섹션 120(e)와 125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또한, 나는 이 일을 위해 Joan McDonald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위원을 이 일을 위한 조정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이천 십일년 시월 칠일 Albany시에서 내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증의 권한에 의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실장